

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				처리기간
				20일
①신청인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번호:)		
②사업장 명칭			③사업자등록번호	
④사무실소재지				
⑤시험실소재지				
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 청 인: (서명 또는 인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				
구비서류	없 음			수수료
				없 음